

# 山地資源化 政策에 力點

金 廷 柱 / 山林廳 法務擔當官

## I. 序 言

山林法은 林産物團束에關한 法律과 山林 保護臨時措置法等 山林關係法律을 統合하여 1961. 12. 27. 처음 制定하였고 그後 營林計劃에 따른 施業은 申告制度로 하는 內容으로 1970年 1次改正, 國有林 分收林設定, 山林事犯 罰則強化等の 內容으로 1973年 2次改正을 거쳐 1980. 1. 4 荒廢된 山林의 綠化를 爲한 1·2次 治山綠化10年計劃의 成功의인 推進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爲하여 全文改正한 以後 정확히 10年間 改正없이 運營하여 왔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山林行政의 與件은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即, 力點을 두고 推進하였던 山林綠化政策은 어느정도 目標을 達成하였으므로 지금까지 山林綠化에 기울였던 山林政策의 基調를 轉換하여 아직도 基礎段階에 머물러 있는 林業生産水準을 높이고 特히 木材의 自給率 向上을 爲하여 山林資源의 積極的 造成과 山地의 多目的 利用을 통한 山林所得源開發等 山地의 資源化 政策에 力點을 두고 推進하기에 이르렀고 이와같은 與件下하서 山地의 資源化 政策을 더욱 內實있게 推進하고 綠化政策過程에서 多少 規制의이었던 法規內容을 國民便宜 爲主로 緩和하여 아울러 最近 林野에 集中되는 不動産投機를 防止함으로써 山地의 利用度를

提高시키는등 林業의 發展과 林業生産力의 向上을 圖謀하기 爲한 制度的 裝置마련을 爲하여 山林法을 大幅 改正하지 아니하면 안될 狀況에 놓여 있었다.

이와같은 必要性에 따라 1989. 1月 篤林家, 山林所有者, 學界, 林業界, 言論界 等 많은 人士들이 參與한 가운데 山林法改正을 爲한 公聽會를 開催하였고 이어서 20日 間의 立法豫告를 거쳐 國民意見을 最大限 收斂하였으며 22個 政府部處의 意見調整을 거쳐 改正案을 確定하고 經濟長官會議, 國務會議을 거쳐 1989. 11. 30 第147回 定期國會에 上程하여 同年 12. 19本會議 議決을 보게 되었고 大統領裁可를 거쳐 1990. 1. 13 法律第4206號로 公布되었다.

이번 山林法改正은 形式에 있어서는 部分改正이지만 量과 比重面에서 全文改正에 못하지 아니하다.

改正 山林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된 날로부터 施行하기로 附則에 規定되어 있어 1990. 7. 14부터 施行되는데 法에서 委任된 事項을 規定하기 爲하여 施行令 施行規則 改正作業을 推進中에 있다.

## II. 山林法改正의 方向

이번 改正作業을 推進함에 있어 設定하였던 主된 山林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地方自治에 對備, 中央의 權限을 大幅 市邑, 市郡等 下部機關에 移讓하고, 山林經營에 對한 施業規制를 緩和하여 山主 自率經營을 誘導함으로써 山林所有者와 國民의 便宜를 圖謀하도록 하였고

둘째, 山地의 多目的利用施策을 開發함으로써 山地利用度의 高度化와 아울러 山林所有者의 所得을 向上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私有林經營을 活性化함으로써 林業生産性を 높이고 國內木材自給率의 向上을 期하기 氣하여 山林經營基盤의 現代化에 力點을 두었다.

넷째, 林野投機를 根源的으로 封鎖함으로써 林野利用制度를 確立하기 爲하여 土地公概念制度의 一環으로 林野去來에 對한 實需要者 中心의 林野買賣證明發給制度를 實施하는等

새로운 山林施策의 開發과 既存施策의 改善에 注力하였다.

### III. 改正主要内容解説

#### 第1條(目的)

이법은 山林資源의 增殖과 林業에 관한 基本的 事項을 定하여 山林의 보호, 育成, 林業生産力의 向上 및 山林의 公益機能의 增進을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保全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目的 一部改正

第1條 目的은 山林政策의 基本的 方向을 定한 것이나 從前의 目的에는 山林의 保護와 山林資源의 增殖만을 規定하였을 뿐 林業生産力의 向上等 林業의 發展에 관한 內容이 없었으므로 林業의 高度化 乃至 林業發展에 관한 內容을 補完하였다.

#### 第2條(定義)

山林의 定義에 “林道”를 追加하고 用語의 定義에 “篤林家” “林業後繼者” “林道技術者”등 定義를 各各 新設

山林의 定義에 林道를 追加하고 新設條文에서 使用하게 되는 專文用語에 對한 法的 定義를 追加함으로써 用語의 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即 營林技術者는 營林計劃을 作成하고 그 施行에 관한 業務를 遂行하는 者로서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產業應用分野의 技術系資格取得者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格을 가진者로 하였고

篤林家は 山林을 模範的으로 經營하고 있는 者로서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要件을 갖춘者로,

林業後繼者는 林業의 繼承發展을 爲하여 林業을 營爲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者로서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로

林道技術者는 林道の 施設에 관한 業務를 遂行하는 者로서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產業應用分野의 技術系 資格取得者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였다.

#### 第5條(權限의 委任·委託)

山林法에 依하여 山林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는 者와 權限을 委任 또는 再任任받아 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契·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에 對하여 그 事業을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라고 權限委託 規定新設

從前에는 山林廳 傘下官署에 對한 權限의 委任規定만 있었으나 山林契·山林組合·山林組合中央會等 特殊法人에 對하여도 山林法을 根據로 한 山林事業을 委託하거나 代行시킬 수 있는 根據規定을 新設함으로서 山林團體 育成的 契機를 마련하였다.

第8條(營林計劃의 作成)

-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所有者가 作成하는 營林計劃은 營林技術者로 하여금 作成하게 하여야 한다는 規定新設
- 公有林 또는 그以上の 市·郡에 걸친 私有林에 對한 營林計劃의 경우에는 市長(서울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除外한다). 郡守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認可하여야 한다는 事前承認制度 廢止
- 市長·郡守는 營林計劃의 認可를 받은 山林所有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認可된 內容대로 施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경우에는 그 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고 取消規定 新設

從前에는 公有林 또는 私有林所有者에 對한 營林計劃作成 義務만 規定되어 있으나 營林計劃作成은 山林의 基礎調査等 專門性을 要하는 分野이기 때문에 5年乃至 10年의 長期計劃因子의 잘못判定으로 因한 時間과 經費의 浪費를 줄이기 爲해 營林計劃은 所定の 資格을 가진 營林技術者만이 作成할 수 있도록 營林計劃制度를 補完하였다.

現實的으로도 營林計劃은 山林所有者가 直接 作成하는 경우는 드물고 大部分이 山林組合을 통해 作成하고 있어서 이는 必要

한 改善이다.

營林計劃 認可에 있어 市·道知事 事前承認制 廢止는 行政簡素化와 山林所有者의 不便解消面을 考慮한 措置로서 承認制를 廢止하여도 市·道知事는 一般의인 行政監督權에 依하여 잘못된 營林計劃 認可를 校正할 수 있기 때문에 廢止로 因한 問題點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從前에는 營林計劃을 認可받고 正當한 事由없이 計劃대로 施業을 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措置를 取할 수 없었으나 營林計劃 制度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爲하여 取消根據 規定을 두는 것은 必要하다.

第10條(林業, 技術指導)

山林廳長, 市·道知事, 山林組合中央會의 會長 또는 山林組合의 組合長은 營林計劃의 施行에 關한 業務를 指導하게하기 爲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機關 또는 그 所屬機關에 營林技術者를 配置하여야 한다고 營林技術者 配置 責任 規定 改正.

從前에는 營林技術者 配置가 山林廳長의 義務로 規定되어 있었으나 實際로 山林廳長이 營林技術者를 모두 確保하여 傘下機關等 必要한 部署에 配置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財政, 人事權이 있는 市·道知事와 營林技術者를 直接心要로 하는 山林組合 및 山林組合中央會長 責任下에 配置하도록 改善하였다.

(다음호에 계속)